

##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편람(5)

본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에서 발간한 「등록업무 편람 1998」의

제3장 <등록유형별 등록절차>를 연재하는 것임 <편집자 주>

### 특허등록

#### (1) 촉탁등록

촉탁에 의한 등록이란 다른 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서와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이 대부분이다.

#### (2) 촉탁등록의 형태

##### ○ 처분 제한등의 등록촉탁(특등령20①)

법원은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제한(예: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회사정리개시, 화의개시 등)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촉탁

##### ☞ 촉탁등록과 관련한 타법령의 규정

- 파산법제110조(파산등의 촉탁), 제111조(파산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), 제112조(등기소의 직무 및 등기세 면제), 제114조(등록에의 준용)
- 화의법 제8조(화의에 관한 등기, 촉탁)
- 회사정리법제17조(정리절차개시의 등기, 촉탁), 제18조(동전), 제19조(정리절차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

준용), 제20조(등기소의 직무), 제22조(등록에의 준용)

- 국세징수법 제51조(무체재산권등의 압류), 제55조(인지세 등의 면제)

##### ○ 예고등록의 촉탁(특등령22)

법원은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(다만,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

##### ○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(특등령59)

법원 또는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

##### ○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(특등령60)

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

#### (3) 등록절차

##### ① 신청서 접수

총무과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등록촉탁서를 서무담당자가 수령하여 등록과 접수대장에 기입, 접수번호

## 호 부여후 촉탁담당자 인수

- ② 등록원부 출력
- ③ 등록방식심사(등록여부 검토사항)
  - 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
  - 법원(세무서)의 결정문 첨부 여부
  -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의 기재사항
  - 등록수수료
    - ☞ 파산결정, 회의결정 등은 파산법 제12조, 회의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등록수수료 면제
- 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
- ⑤ 결재
- ⑥ 촉탁의뢰 기관(법원, 세무서) 과 등록권리자·의무자에게 등록필 통지
- ⑦ 등록원부 등재·정리 및 서류 보관
  - ☞ 등록방식심사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는 촉탁서 반려

※ 출원시 선임한 대리인도 “관리인”이며 이때의 단순선임과 설정등록후 선임등록관리인과는 등록호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.

## (2) 특허관리인의 선임등록근거

-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(특5①).
-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(특5③).
- 재외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는 특허관리인을 선임·등록해야 한다(특5④).
-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한 경우 불수리처리(특규11)

## 특허관리인의 선임등록

### (1) 특허관리인의 의의

특허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의 일종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(재외자)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자이다. 특허법 제5조(재외자의 특허관리인) 제1항에서는 특허관리인을 강제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즉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,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### (3) 특허관리인의 권한

특허에 관한 일반절차의 수행 및 특허 수여된 권한의 행사(특5)

### (4) 특허관리인 선임등록신청자

재외자 또는 특허관리인

### (5) 등록절차

- ① 신청서 접수→접수대장에 기록(접수인 날인, 접수번호 부여)
- ② 등록방식심사(등록여부 검토사항)
  - 위임장(권리자, 등록번호, 명칭 등 확인) 및

## 그 번역문

### ○ 수수료

※ 보정, 불수리, 과오납결정 및 통지

- ③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 - 신청서와 대사하여 입력사항 확인
- ④ 결재
- ⑤ 등록필 통지
- ⑥ 등록원부 등재·정리 및 서류보관

## 가 등 록

### (1) 가등록의 의의

가등록이란 장래의 본등록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을 말한다.

### (2) 신청자

등록권리자(가등록권리자),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, 가처분명령에 의한 경우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.(특등령19①)

### (3)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
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,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, 시기부양도예약증서, 대물변제예약서, 대물변제증서

### (4) 가등록요건(특등령2)

-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경우
- 특허권·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
- 위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

### (5) 등록절차

- ① 신청서 접수→접수대장에 기록(접수인 날인, 접수번호 부여)
- ② 등록원부 출력
- ③ 등록방식심사(등록여부 검토사항)
  - 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
  -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의 기재 사항
  - 기타 원인서류의 구비여부
    -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
    - 시기부 양도예약서·대물변제예약서, 대물변제증서
  - 수수료 납부 확인
    - ※ 방식심사 결과 보정 및 불수리결정
- 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 - 신청서와 대사하여 입력사항 확인
  - 가등록 방법
    -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당해 권리자중 사항란에 등록

※ 가등락의 말소는 가등락명의인만으로 신청. 다만, 신청서에 가등락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락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(특등령48)

⑤ 결제

⑥ 등록필 통지

⑦ 등록원부 정리 및 서류보관

➤ 가등락을 한 후 본등락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락의 아래에 가등락의 순위번호와 동일한 순위번호로 그 등락을 하여야 함. 본등락을 하기 전에 가등락의 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도 같음(특등칙51)

➤ 본등락 신청시는 가등락 신청시의 서류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

※ 민법상의 가등기

① 가등기란

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.

② 가등기의 유용성

○ 매매의 예약이든가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반제하지 않을 때에는 대우반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.

○ 등기에는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. 왜냐하면 무담보의 토지로 알고 매매예약을 하였을 경우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동안 누군가가 먼저 지당권의 등기를 필하면 당연히 그 등기를 필한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므로 매매예약의 효력을 장래에 있어 담보하기 위하여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는 가등기가 필요하다.

③ 가등기의 효력

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므로 가등기 후에 행한 모든 등기는 그 가등기와 상치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.

※ 조건과 기한(가등락과 관련한 정지조건부 및 시기부 권리)

① 조건·정지조건·정지조건부 권리

○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그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.

○ 정지조건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여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는 계약에 있어서 시험합격이 그것이다.

○ 정지조건부 권리란 이처럼 정지조건이라는 부관이 붙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위 예에서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시계를 얻게 될 자의 권리가 바로 정지조건부 권리이다.

② 기한·시기·시기부 권리

○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·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등을 장래에 있어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기와 중기,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.

○ 시기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우의 기한으로 그 시기의 도래에 당해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. 그 예로는 내년 10월에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계약에서 내년 10월은 그 효력의 시기인 것이다.

○ 시기부 권리란 위 예에서 보면 내년 10월에 자동차를 인도받게 될 자의 권리가 시기부 권리인 것이다.